

일본의 대학재정 정책을 통해 본 한국 사학 재정지원 발전 방향

이 면 영 홍익학원 이사장

1. 서 론

현재 우리 나라는 심각한 경제 불황의 와중에서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칫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절실한 재정 투자가 희생되기 쉬운 것이 교육 부문이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막론하고 이미 우리 정부의 교육예산에는 큰 주름살이 지고 있으며 '99년도 교육예산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구조조정의 시기에야말로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정책 운용의 정도라고 본다. 특히 고등교육투자는 인력의 고도화를 동반하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본과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고등교육의 사립 의존률을 보면 우리가 약 76%, 일본이 약 7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표 1〉 참조).

이렇게 높은 사학의 비중에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에 특히 취약한 것이 사립대학이다.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능력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감소 등으로 학생들 또한 학업 포기 의욕에 빠지기 쉽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대학재정 정책의 주요 면모를 사립대학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재정 정책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국립대학재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사립대학진흥 정책의 논의로 들어간다. 일본에서 국립대학재정은 국립대학 특별회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8년 예산을 기준으로 2조 7009억 엔 수준이다. 이러한 국립대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은 극히 비탄력적인 경직성 경비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그 중 10분의 1(2.950억 엔) 규모인 교육연구추진경비의 반 정도가 비경직성 사업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각은 지난 '98년 11월 정부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조폐인쇄국 등 85개 정부기관과 함께 모든 국립대학을 독립법인화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국립대학 제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이다.

〈표 1〉 한국과 일본 사립대학의 비중

	학생수(백만)	국공립	사립(비율)	교수	국공립	사립(비율)
한국	1,368	334	1,034(75.6)	150	26	114(76.0)
일본	2,567	698	1,899(74.0)	576	151	425(73.8)

※ 자료 : 「고등교육 국제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전반적으로 보아 일본의 사학진흥정책의 특징은 그 투명성과 엄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재정투자의 규모를 신속적으로 운용하고, 일반 경상비보조와 특별보조 및 자본적 투자 지원 정책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전체 고등교육체제 내에서의 사립대학의 역할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립학교 진흥정책이 이렇게 안정적 신속적으로 운용되는 바탕에는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기초로 철저히 법률에 의한 행정을 펴는 일본 문부성과,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사학에 대한 재정보조 및 투융자 사업을 실행하는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역할이 크다.

한국이 일본의 교육정책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철저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입각한 사학진흥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고유한 역할 인식과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원칙에 바탕을 둔 사립대학 재정지원,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전문적 활동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 이를 좀더 상세히 보고자 한다.

2. 법률에 입각한 사학진흥 정책

일본의 사립학교 진흥정책은 철저히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라는 국가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 제1조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사립학교 진흥 조치의 목표 세 가지를 사학의 '경영의 건전성 향상', '교육조건의 유지 향상', 학생의 '수학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세 가지로 못박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하여 동법 제4~9조는 사학에 대한 국가 공공단체의 보조, 보조액의 감액 증액 조치를 위한 법률요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비 보조에 관해 동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조 ① 국가는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가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범위,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아울러 이에 관하여는 일본 참의원이 동 법률 통과 시 부대 결의한 다음 결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본법 운용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육의 특질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단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①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보조는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2분의 1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4조, 제8조에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통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에 대부분 또는 재산의 양도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이외의 사학조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 법률 제12~14조는 국가로부터 동법에 따른 조성 조치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이 경우 국가와 사립학교간의 관계, 예를 들어 보조금 증액 감액 회계상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지원자금 사용에 따른 학교의 책임이 명확하고 엄정해지는 것이다. 원래 보조금을 받는 사학은 공공재정자금 사용자로서 특별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규제의 내용은 인건비 등 학교지출에 대한 통제, 교육여건에 대한 통제 등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사학에 대한 보조금에 따르는 보조조건이 체계적으로 검토·부과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에 그쳐 재정자금 사용자의 책임성이 희박해

질 우려가 크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사학진흥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상세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법률에 의한 행정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 정책의 고객인 사립학교 운영에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관한 한 사립학교 육성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일부 운용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그 예측가능성 부족과 행정편의주의 탓으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학 보조금 정책과 그 운용

우리 나라 고등교육은 일본과 같이 사립대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립대학 학생에 비해 사립대학 학생이 위헌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크게 부족하다(표 2) 참조. 사립대학 지원자금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학 지원정책의 수혜자는 해당 사학경영자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가진 사립학교 학생인 것이다. 세금에 의한 국가재정 사용에 있어

정부는 교육정책 우선 순위와 국가재원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동등한 비중으로 중시하고 이를 사학 보조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나마 극히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이 이른바 '평가 후 차등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분되거나 목적사업별 경쟁적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다. 대학간의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원칙 그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러한 목적별 보조나 경쟁적 보조 정책은 투명한 배분 기준에 의한 일반경상비 보조금(Formular Grants) 정책이 시행되는 바탕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후 차등 지원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하나, 통상 정부보조금은 경쟁의 왜곡과 불공정을 낳는 경쟁제한적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이다. 학생수, 교원수 등을 기초로 하는 일정한 공식에 의한 일반경상비 보조방식이 많은 나라에서 보조금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정책의 기본은 일정한 배분공식에 의한 일반경상비 보조에 놓여 있다. 1998년의 일본 문부성의 사학조성 예산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사학에 대한 보조정책의 74.3%는 경상비 보조이며, 또 그 중의 85%를 배분공식에 의한 일반경상비 보조가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반경상비 보조액 산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학 재원구성의 국가별 비교 (단위: %)

	호 주	일 본	미 국	한 국
공공 재원	74.7	46.4	48.4	16.0
민간 재원	25.3	53.5	53.5	84.0

※ 자료: 「고등교육 국제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표 3) 일본의 사립학교 조성 예산

(단위: 억엔)

사립대 경상보조 (목적별 특별보조비)	사립고교 경상보조	사립고도화 (0)자액)	연구시설 정비보조	연구장치 시설정비	사립고교 시설현대화	진흥공제 사업단출자	합 계
2,950.5 (603.2)	748.5	19.2	37.3	188.2	22.4	3.0	3,969.1
74.3%(15.2%)	18.9%	-	-	4.7%	-	-	100%

※ 자료: 일본문부성 내부자료.

$$\begin{aligned} \text{보조기금액} &= \text{교직원수} \times \text{급여보조단가} \times 1/2 + \\ &\quad \text{강사시수} \times \text{강사보조단가} \times 4/10 + \text{교직} \\ &\quad \text{원수} \times \text{후생비보조단가} \times 4/10 + \\ &\quad (\text{교원수} \times \text{교육비보조단가} + \text{사무직원수} \\ &\quad \times \text{운영비보조단가}) \times 1/2 \end{aligned}$$

실제보조액 : 학생정원관리상황(30점), 교원조직정비
상황(20점) 학생납부금 사용내역(50점)
을 평가하고 해당학교 급여수준·수시상황
에 따라 2.5~10점을 감점한 평점을 토
대로 상기 보조기금액의 130%~15.0%
를 지급함.

∴ 이러한 공식의 실제 적용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당해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규모의 비율을 나타내는 압축
률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보조금액이 결정된다.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위 공식에 따라 그 학교가 받을
일반보조금의 규모를 산정하여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다. 정부의 위탁을 받은 사학진흥공제사업단은 이들 신
청 내역의 정확성을 심사한 후 당해 연도 보조금 규모에
따른 압축률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수를 결정·통보하
게 되며 각 대학별로 보조액이 공개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절차의 특징은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5개 특별보
조비(고도화추진, 정보화추진, 국제교류추진, 생애학습
추진, 대학개혁추진의 5개 부문)가 대학에 따라 약간
추가된다. 5개 특별보조비 또한 상세한 보조기준이 사
전에 공개되어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이 안정적이고 예
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는 바로 공평
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투명한 행정에 있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사학보조는 일반경상비 보조가
없는 것은 물론, 사업별 특별보조마저 사전에 평가와 보
조의 기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공개되지 않음으로
써 행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공정성에 대

한 의심을 낳기 쉽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
다. 제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투명성이
결여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잘못된 제도로 변하고 만다는
것은 오늘날 교육행정을 위시한 한국의 행정일반이 반드시
엄두에 두어야 할 불변의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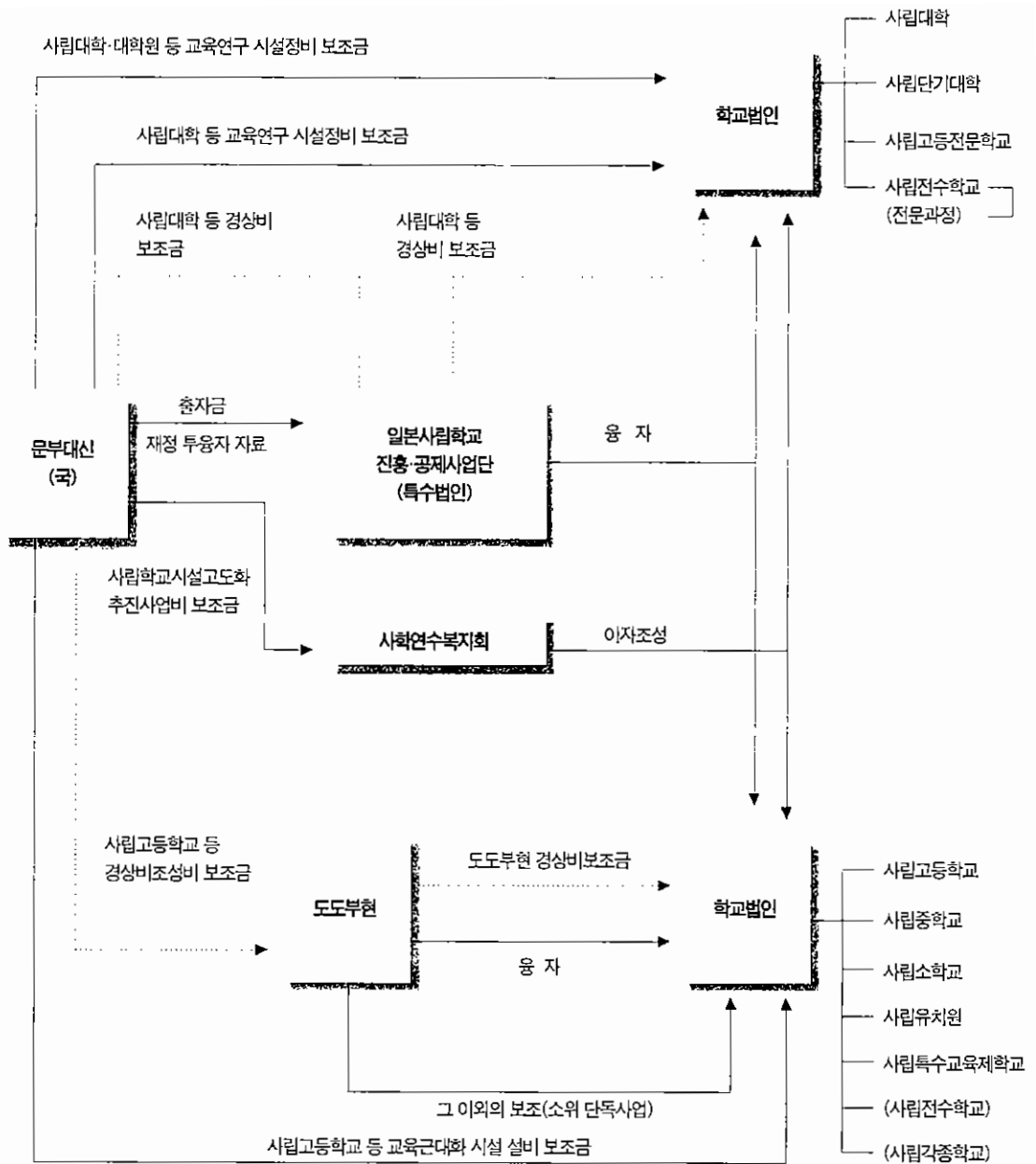
한편 일본의 사학보조 정책은 경제적 상황과 정책추
세에 따라 시기적 변화와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1974
년 경제성장이 -0.5%를 기록하는 등 '70년대 중반 이
후 '80년까지 일본의 경제가 어렵고 사립학교 재정이
압박을 받을 때 보조금은 계속 늘어났다. 정부보조금이
사학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에 29.5%까지
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후 경제회복기에 한
동안 줄다가 근자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힘들어지면서 보조금이 다시 늘고 있다. <표 4>
는 이를 요약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경기가 어려
울 때 사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사학보조 정책 방향이었다. 최근의 경기 불황 속
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교육정책의
목적성이 강조되면서 전체 보조금액 중 특별보조의 비중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재정을 교육개혁의 수
단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세계적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에 정리한 일본의 사학지원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사업별 특별지원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의 사학조성 책임 이행과
사립학교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일
반경상비 보조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고 본다. 특히 앞의 <표 2>가 나타내듯 한국의 사립대학
은 일본의 사립대학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 비율과 학생

<표 4> 일본의 사학보조금의 변동 추이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1998
경제성장률	3.8	2.6	4.1	6.0	0.7	3.3	-
문명보조추진액(억엔)	1,605	2,835	2,438	2,453	2,601	2,875	2,950
보조금 중 특별보조비율	2.6%	2.8%	4.1%	7.5%	13.1%	20.0%	23.5%

∴ 자료 : 일본 문부성 내부자료.



(그림 1) 사학조성·융자제도의 개요

일반보조

특별보조

㉓ 보조 기준액의 산정

(보조비목)	(산정기초)	(보조율)
교직원의 급여비	교직원수 × *가	1/2
비상근교원급여비	수업시간수 × *가	4/10
교직원복리후생비	교직원수 × *가	4/10
교육연구경상비 교원경비 학생경비	교원수 × *가 학생수 × *가	1/2

- (1) 고도화추진특별경비
 (2) 정보화추진특별경비
 (3) 국제교류특별경비
 (4) 생애학습추진특별경비
 (5) 대학개혁추진특별경비

㉔ 경사배분

㉓ 의 보조기준액에 관해서, 130%~15.0%의 범위 내에서 하기* 교육연구조건외
 정비에 따라 경사배분

① 조정계수에 의한 조정(130%~25%)

- 학생정원의 관리상황 (배점비율 30점)
- 교원조직의 정비상황 (배점비율 20점)
- 학생납부금의 교육연구경비지출에의 환원상황 (배점비율 50점)

② 급여지수·수지초과의 상황에 의한 감점 조정

- 학생납부금의 교육연구경비지출에의 환원 상황의 배점*1.5점~18.5점의 범위에서 감점

㉕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조, 실적에 따른
 일반보조*상승세

국고보조액 (㉓ + ㉕)

(참고)평성 10년도

- 不交付 : 법령위반 등 관리운영이 특히 부적정한 자
 정원초과율 수용정원 1.76배 이상
 입학정원 1.48배 이상 (의치학부 1.10배 이상)
 欠員率 수용정원 59% 이하
 미완성, 모집 정지 등
- 감액조정 : 관리운영 부적정 등

<그림 2> 사립대학 등 경상비조성금의 산정방법

납입금 의존이 특징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보조행정에서 신청기간, 신청기준, 심사방법 등의 면에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과 사학에 대한 투융자

원래 자본재비용은 그 내구기간에 걸쳐 분산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상재원은 사립학교의 자본적 투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립학교 시설사업에는 자본예산방식의 적용과 함께 이를 위한 투융자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사립학교의 시설투자비는 소액의 자기자금 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융자에 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1997년 이전, 사립학교진흥재단)은 사학에 대한 수조 엔 규모의 재정융자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보통 10년(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또는 20~25년(일반 시설자금의 경우)의 대부기간에 이차율은 연 1.8~1.9%의 좋은 조건에 사립학교에 융자된다. 일본은 사립대학의 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의 추가융자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최근 '93~'97년 사이 동 사업단의 매년 추가융자액을 추이를 <표 5>에 요약하였다.

일본의 사정에 비하면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융자는 매우 제약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일반 기업들보다도 대체로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다. 사립학교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민간기업보다도 더욱 육성되어야 함에도 금융 혜택에서 기업보다도 더욱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담보 및 신용평

가 등 사립학교에 대한 대출조건과 대출재원 등에 별도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자산 뿐 아니라 교육용 기본자산까지도 융자를 위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사립학교 회계제도를 통한 사학 재정의 건실성 확보

사학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건전한 회계제도가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일본의 사학회계제도는 이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사학재정의 충실과 합리적인 비용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사학회계제도를 연구하고 그 장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학회계는 법인과 학교회계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사학회계 체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철저히 구분한 결과 사학재정 운용에서 심각한 경직성을 낳고 있다. 이는 사학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경직성은 학교법인과 학교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인식하는 교육행정의 그릇된 관행에서 유래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지적하듯이 법인과 학교는 별개가 아닌 것이다. 법인과 학교 두 개의 회계 구분은 다만 관리상의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학교 내부적으로 구분 경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하면 그 경직성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가 더 커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사학 회계는 우리 나라에 비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원칙에 훨씬 충실하다. 걱정 수준 내에서 각종 충당금과 적립금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학교자산의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학 재정의 건전화와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재투자 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립학교에서도 충당금과 적립금의 설정이 대폭 허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학에 대한 융자의 활성화와 사학재정의 효율화를

<표 5>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 추가융자액 추이 (단위: 백만 엔)

1993	1994	1995	1996	1997
103,000	95,138	63,250	63,043	63,467

※ 자료: 平成 9年度版 今日の私學財政

위하여 대학교육에서도 원가개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통한 자산 가액 평가의 현실화와 함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감가상각은 교육에 따르는 고정자산비용의 부담을 현재의 학부모와 미래의 학부모 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비용배분의 합리화 수단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학재정의 건전과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 론

우리 나라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희생해서라도 사회 전체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해야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비해 교육투자에서 언제나 우선 순위가 밀려온 것이 고등교육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빈약한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그대로 사립대학의 어려움이다. 지금부터라도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긴요한 구조조정의 관건을 이루는 요인이다. 일본의 사학조성정책에서 우리가 정책발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고 본다. 그 중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하면 1) 법률에 근거한 사학에 대한 지원정책의 틀을 마련할 것, 2) 배분공식에 근거한 일반 경상비 보조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 3) 사학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개하고 그 기준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 4) 사학에

대한 용자제도와 대부축진 시책을 마련할 것, 5) 사학회 제제도를 정비하고 재무회계원칙을 확대 도입할 것, 6)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높일 것의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국제교육지표』,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국제지표』, 1997.
 文部省編, 『平成10年度版 教育白書』.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私立大學經常費補助金の交付狀況』.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私立大學等 經常費補助の概要』.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私立學校に對する 助成融資の全體像』.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私學助成の方向性』.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私學助成に關する 法律』.
 문부성 고등교육과·조성과 내부자료, 『日本の 教育に對ける 私立學校の位置』.
 文部省 高等教育局, 『平成10年度 豫算案 概要』.
 文部省 大臣官房, 『文教豫算のあらまし』.
 日本私學振興財團, 『平成9年度版 今日私學財政』.
 『文部統計要覽』.

이면영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흥익대 교수와 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흥익대 명예총장과 학교법인 흥익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